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9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952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81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홍성만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효은

변론종결 2022. 12. 21.

판결선고 2023. 1.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81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여주시 C 답 4,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4.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5. 2. 접수 제12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그 무렵’을 ‘2017. 5. 19.’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타당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앞서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각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통해 위 적극재산 가액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D의 소극재산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인 819,582,600원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앞서 인정된 D의 소극재산 735,575,952원 외에도 D의 원고에 대한 추가 차용금채무 1,600만 원, L에 대한 차용금채무 6,700만 원, K조합에 대한 추가대출금 105,387,368원(총 240,000,000원의 대출금에서 앞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134,612,632원을 제외한 금액) 합계 188,387,368원이 추가로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은 합계 923,963,320원(= 위 735,575,952원 + 위 188,387,368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D의 적극재산인 819,582,600원을 초과하여 D이 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2022. 12. 17.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D이 L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받아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D이 L로부터 위 6,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L는 D의 배우자인 점 및 L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3, 4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D은 L로부터 위 6,700만 원을 증여받는 등으로 위 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② 원고는 갑 제19호증(D의 부채증명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D이 K조합에 2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240,000,000원은 D의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10,000,000원과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3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D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인정되었고(위 대출금 원금에 일부 이자까지 합하여 소극재산이 인정되었다), 달리 D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조합에 대하여만 2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③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600만 원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차용증(갑 제14호증)에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한 대주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고, 그 차용에 관한 계좌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위 차용증 기재만으로는 D이 원고에게서 1,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위 대여금 1,600만 원을 D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751,575,952원(= 앞서 인정된 소극재산 735,575,952원 + 위 대여금 16,000,000원)으로서 앞서 인정된 위 당시 D의 적극재산 합계액 819,582,600원에 미치지 못하여 D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심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D의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문성, 판사 정승화